

##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0. 2.

### 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

1. 조례명: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소규모수도시설 유지·보수에 대한 군민 부담 절감 및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의 문구 및 재질 등을 개선하고, 법령체계에 불부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수도시설 유지·보수에 대한 군민 부담 절감(안 제9조)
- 유지·보수 사업비의 군수와 주민 부담 구분을 삭제
  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·보수 비용 지원
- 나.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 안내판 문구 및 재질 변경 등(안 제5조)
- 취수원 안내판 재질을 스테인레스에서 알마이트로 변경하고 두께를 5mm에서 3mm로 변경
  - 안내판 내용문에 표기된 수도사업과(☎880-2591)를 ○○○○○(☎ )으로 변경
- 다. 법령 체계에 불부합한 용어 정리 등(안 제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))
- (제1조) 조례 규정의 목적이 되는 법령의 "항" 표기
  - (제14조) "하동군 수도급수 조례"를 "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"로 변경
  - (제16조) 하위번호가 하나만 있기에 ①삭제
  - (제17조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21년)에 따라 "선출"을 "호선"으로 변경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 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#### 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jina927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 명: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##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7조 및 같은 법 제55조”를 “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·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4조 후단 중 “「하동군 수도급수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선출하여”를 “호선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선출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선출된”을 “호선된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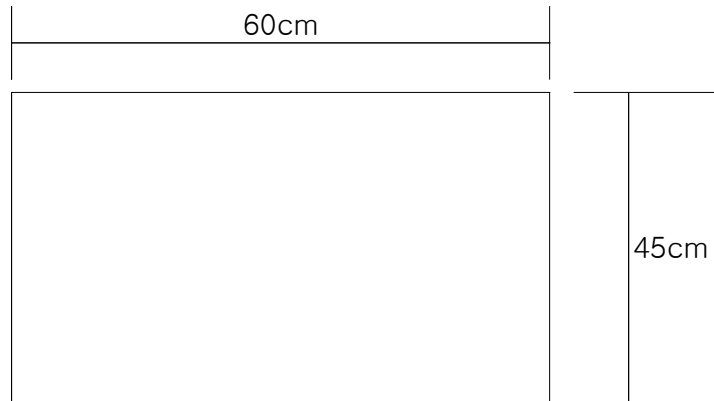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○○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(제5조제1항 관련)

1. 규격



재질 및 두께 : 3mm내외의 알마이트 재질

바탕 색 : 흰 색

글씨 : 청 색

2. 내용문

알 릫

1. 이곳은 「수도법」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입니다.
2.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관리번호 :

○ 위치 :

○ 시설용량 :

※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 연락처 : 하동군 ○○○○○(☎ )



다.

1. 군수부담 : 심정개발. 배수지  
신설 및 보수. 송·배수관로 신  
설 및 노후로 인한 전면교체

2. 주민부담 : 송·배수관로 부분  
보수. 급수관로 및 급수장치의  
신설·보수. 모타교체 및 보수  
등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군수부  
담 소요보수비를 매 회계연도  
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4조(요금징수) 관리자가 마을  
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  
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 
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 
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이  
경우에 「하동군 수도급수 조  
례」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  
여 징수할 수 없다.

제16조(설치) ① (생 략)

제17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소규모  
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 
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 
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  
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

<삭 제>

제14조(요금징수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하동군 수도 급수 조  
례」-----  
-----.

제16조(설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17조(구성) ① -----  
-----  
호선하여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호선한

다.

③ (생략)

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호선된 -----  
-----  
-----.